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6. . . (제 회)	

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 
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김성환 (기후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6. . .

법제처 심사 전

## 1. 의결주문

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제안이유

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 근거 신설, 표시기준 위반 등에 대한 개선명령 신설 등 「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'26.5.12 시행)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

## 3. 주요내용

가. 정보망 처리 업무 신설(안 제37조)

유효기간 연장 관련 업무를 정보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

나. 개선명령 관련 업무 위임(안 제38조)

개선명령 업무 관련 사항을 유역·지방환경청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

다. 유효기간 연장 관련 업무 위탁(안 제39조)

유효기간 연장 업무 관련 사항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

대통령령 제 호

##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7조제1항제1호 중 “법 제10조제4항”을 “법 제10조제2항 및 제4항”으로, “신고·변경신고”를 “유효기간 연장 및 신고·변경신고”로 한다.

제38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의2. 법 제10조제9항 및 제34조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

제39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의2.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의 접수, 연장 여부의 통보 등

### 부 칙

이 영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7조(생활화학제품 등의 정보망의 처리 업무)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”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.</p> <p>1. <u>법 제10조제4항</u>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<u>신고·변경신고</u>, 승인·변경승인에 관한 업무</p> <p>2. ~ 14. (생략)</p> <p>②·③ (생략)</p> <p>제38조(권한의 위임) ① (생략)</p> <p>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2. ~ 11. (생략)</p> <p>제39조(업무의 위탁)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2</p>	<p>제37조(생활화학제품 등의 정보망의 처리 업무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<u>법 제10조제2항 및 제4항</u>----- ----- ----- <u>유효기간 연장 및 신고·변경신고</u>----- --</p> <p>2. ~ 1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8조(권한의 위임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1의2. 법 제10조제9항 및 제34조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</u></p> <p>2. ~ 11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9조(업무의 위탁) ① ----- -----</p>

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 
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  
다.

1.·2. (생략)

<신설>

3. ~ 16. (생략)

② ~ ⑤ (생략)

-----  
-----  
--.

1.·2. (현행과 같음)

2의2.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 
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의 접수,  
연장 여부의 통보 등

3. ~ 16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⑤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기후부 화학제품관리과	
연 락 처	(044) 201 - 6809